

『2025년도 전북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전북지역 농생명바이오 잠재기업군 IR지원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도내 주축산업인 농생명바이오의 진흥을 도모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을 투자유치하여 산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자 「전북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지역 농생명바이오 잠재기업군 IR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전북지역 농생명바이오 잠재기업군 IR지원
- 신청자격 : 농생명바이오 산업 전·후방 연계 기업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500만원, 5개사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기업별 IR 컨설팅 지원 (컨설팅 보고서 1식 도출 필수)
 - 기업별 투자 발표를 위한 IR 자료 제작 및 IR 피칭 기회 제공
- 세부내용
 - 신청시 기업이 희망하는 컨설팅 수행기업 매칭 원칙
 - 지원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의 자부담 원칙(현금부담)
 - 총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는 전액 참여기업 부담

2

사업개요

사업목적	-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도내 농생명바이오 산업 기업의 IR 자료 제작 및 투자 유치를 위한 VC, AC 심사역 매칭
지원요건	<input type="checkbox"/> 소재 - 공고일 기준 도내 사업장 또는 생산 가능한 공장 소재 기업
	<input type="checkbox"/> 업종 - 도내 농생명바이오 분야 전·후방 연계 기업군
	<input type="checkbox"/> 매출 및 업력 - 매출액 및 업력 제한 없음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500만원, 5개사 이내 지원 (총 지원금액 약 25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 기업별 IR 컨설팅 지원 - 기업별 투자 발표를 위한 IR 자료 제작 및 <u>IR 피칭 기회</u> * 제공 * 작성 IR을 바탕으로 TP 자체IR 행사 및 전북창업대전 연계 발표 진행 예정
지원방법	-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 * (기업 선지출 후, 기업이 제출한 정산 서류 검토 후 직접 지급 예정)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5. 10. 31. - IR 기업 발표자료 : 2025. 9. 20. 限 - IR 컨설팅 보고서 : 2024. 10. 31. 限
공고기간	- 2025. 08. 08. (금) ~ 2025. 08. 22. (금), 18:00까지
접수기간	- 2025. 08. 11. (월) ~ 2025. 08. 22. (금), 18:00까지

3

결격사항

구분	신청제외 대상
1	필수 제출 서류 누락 또는 제출된 서류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2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3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4	세무당국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5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6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7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등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8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4

지원절차



※ IR 발표 및 기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기업지원금 기준 기업 당 최대 5,000천원까지 지원
 - 지원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의 자부담 원칙(현금부담)
 - 총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는 전액 참여기업 부담
 - 지원금 및 부가가치세 기업 선 지출 이후, 정산서류 검토 후 기업 지급 예정

프로그램명	지원금	기업 부담금 (지원금의 10%이상)	총 사업비	비고
IR 지원	5,000천원	500천원	5,500천원	VAT 550천원은 기업부담

※ 사업 결과보고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시, 기업은 총사업비 및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 (5,500천원 +550천원 = 6,050천원)에 대해서 지출증빙 해야함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5. 08. 08. (금) ~ 2025. 08. 22. (금), 18:00까지
- 접수기간 : 2025. 08. 11. (월) ~ 2025. 08. 22. (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중기부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
 - 접 수 처(RMS시스템) : <https://www.smtech.go.kr/region/rms>

※ SMTECH(중기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완료 후 과제 신청 가능

※ 접수 마감일 접속 증가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 요망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참가신청서 ※붙임파일	한글파일로 제출(**.hwp) * 직인 페이지는 한글파일에 삽입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양식참고
3	중복지원 금지 약약서	양식참고
4	사업자등록증	공고일 이후 발급
5	최근 3개년도(22~24) 재무제표	
6	컨설팅 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사업비 산출내역과 일치
7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 스캔본(pdf)는 1페이지에 1장이 나와야 하며, 컬러 스캔 필수

※ 신청서 상의 데이터는 제출서류(증빙)상의 데이터와 필히 일치하여야 함

6

추진일정

	추진절차	주관	일정
사업신청	참여기업 모집공고	-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08.08. ~ 8.22.
	사업신청(온라인)	- 신청기업 → 전북TP	
평가	수혜기업 선정을 위한 서면 평가	- 전북TP	8월 內
수혜기업 선정 및 협약	참여기업 선정통보	- 전북TP	
	협약체결	- 전북TP ↔ 선정기업	
과제수행	선정기업별 과제 수행(컨설팅 진행)	- 선정기업	협약일 ~10.31
IR 발표	전북TP IR 피칭 행사 및 전북창업대전 IR 발표	- 선정기업	9월 말 ~10월 中 (예정)
결과평가 및 사업비 지급	결과보고서 접수	- 선정기업 → 전북TP	~10.31
	결과평가(서면평가)	- 전북TP(외부전문가)	11월 1주
	사업비 지급	- 전북TP → 선정기업	11월 中

※ 추진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사업비) 부정 청구 시 부정이익 전액(이자포함)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허위청구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외사용 2배 /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공공재정지급금부터 적용)이 부과됨.
- 부가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업부담
-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 받은 기업지원금은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선정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누락하는 경우, 선정취소, 사업 참여제한,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기업은 지원 사업 완료 후 3년까지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성과측정 제반서류(재무제표, 고용보험가입자증명서, 기타 우수사례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8

문의 및 상담

- (재)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지역균형사업팀
 - 임소빈 주임 연구원(063-219-2129 / ss28@jbtp.or.kr)
 - 신유리 연구원(063-219-2122 / youri728@jbtp.or.kr)